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2조(회원)</b></p> <p>① ~ ② (생략)</p> <p>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u>기타</u>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p>	<p><b>제2조(회원)</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그 밖에</u> ----- ----- -----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등)</b></p> <p>① ~ ③ (생략)</p> <p>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u>사실에 대한 입증책임</u>은 카드사가 집니다.</p> <p>⑤ ~ ⑦ (생략)</p>	<p><b>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등)</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사실을 증명할</u> <u>책임</u>은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b></p> <p>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u>기재</u>됩니다.</p> <p>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u>잔여</u>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p> <p>③ (생략)</p> <p>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p>	<p><b>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b></p> <p>① ----- <u>표시</u>됩니다.</p> <p>② ----- ----- ----- <u>남은</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생략)
- 2.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신설)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대체발급 시 기존상품과 대체상품의 차이(적립 및 할인 혜택, 이용조건 및 한도 등)
- 3.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⑤ -----  
-----  
----- 전자문서(「전

대체카드 발급 시  
상품 차이  
안내 강화  
  
  
전자문서 정의

<p>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u>동의없는</u>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u>입증책임</u>은 카드사가 집니다.</p> <p>⑥ (생략)</p>	<p>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 ----- <u>동의 없이</u> ----- ----- ----- ----- <u>사실을 증명할 책임은</u> ----- -----.</p> <p>⑥ (현행과 같음)</p>	<p>문구 추가 삽입</p> <p>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5조(카드의 관리)</b></p> <p>① (생략)</p> <p>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u>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u>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p> <p>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u>구카드</u>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p> <p>④ <u>제1항 내지 제3항의</u> 이행을 <u>태만히 하여</u>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b>제5조(카드의 관리)</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여·양도하거나</u> ----- -----.</p> <p>③ ----- ----- <u>중진 카드</u> ----- ----- -----.</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 -- <u>게을리하여</u> ----- -----.</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6조(연회비 청구)</b></p> <p>① (생략)</p> <p>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u>분납</u> 청구도 가능합니다.</p>	<p><b>제6조(연회비 청구)</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u>분할납부</u>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1. 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p> <p>2. (생략)</p> <p>③ <u>최초년도</u>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u>최초년도</u>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p> <p>④ ~ ⑤ (생략)</p>	<p>1. 분할납부 1회차 회비가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u>최초 연도</u> ----- ----- ----- ----- <u>경우에만 최초 연도</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p> <p>법제처 요청 일본어 투 정비 어문규범 정비</p>
<p><b>제7조(카드이용 정지)</b></p> <p>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u>이용</u>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p> <p>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u>허위로</u>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2. ~ 7. (생략)</p>	<p><b>제7조(카드이용 정지)</b></p> <p>① ----- ----- ----- -- <u>카드이용을</u> ----- ----- ----- ----- ----- ----- ----- ----- -----.</p> <p>1. ----- ----- ----- <u>거짓으로</u> ----- ----- -----</p> <p>2. ~ 7.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p> <p>② (생략)</p> <p>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p> <p>④ (생략)</p>	<p>8. ----- ----- ----- <u>규정된</u> ----- ----- <u>목적을 달성하기</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 및 명확한 표현으로 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7조의3(카드의 해지)</b></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3(카드의 해지)</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또는 ----- ----- ----- -----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b></p> <p>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p>	<p><b>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b></p> <p>① ----- ----- ----- -----</p>	

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생략)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

-----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을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카드사에 -----  
-----.

④ 제3항에 따른 -----  
다음 연도 -----  
-----  
-----  
----- 일 단위로  
계산한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  
-----  
-----  
-----  
-----

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

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 및  
한자어 정비

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 및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p>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 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용 통 <u>기타</u>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p> <p>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 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u>인</u> <u>용</u> <u>한</u> <u>도</u> <u>를</u>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 ----- ----- ----- 비대면거래에서 ----- ----- ----- ----- ----- ----- ----- ----- -----.</p> <p>② ----- ----- 등으로 ----- -- 또는 그 밖의 ----- -----.</p> <p>③ ----- ----- ----- ----- 카드 이용한도를 -----.</p>	<p>법제처 요청 일본어 투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b></p> <p>① 카드를 해외에서 <u>이용하거나</u>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u>둘</u>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p> <p>③ <u>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 “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u></p>	<p><b>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b></p> <p>① ----- <u>이용하거나</u> ----- ----- ----- -----.</p> <p>② ----- ----- ----- 해당 ----- -----.</p> <p>③ <u>국내 및 해외 사용 겸용으로 발급된</u> <u>카드</u>는 ----- ----- <u>다만, IC칩 비밀번호(PIN번호)</u> <u>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이용 및 일부</u> <u>해외가맹점에서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u></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될 수 있습니다.	습니다.	
<p><b>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b></p> <p>① ~ ② (생략)</p> <p>③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p> <p>④ ~ ⑤ (생략)</p>	<p><b>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받은 ----- ----- ----- ----- ----- ----- ----- ----- ----- ----- ----- -----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법령 통일 대상</p>
<p><b>제11조(할부구입)</b></p> <p>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u>할부가능금액</u>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p> <p>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u>2월</u>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u>가산한</u>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p>	<p><b>제11조(할부구입)</b></p> <p>① ----- ----- <u>할부 가능 금액 범위에서</u> ----- ----- -----</p> <p>② ----- ----- ----- ----- ----- ----- ----- ----- ----- ----- -----</p> <p>③ ----- ----- <u>더한</u> ----- ----- -----</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 및 어문규범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④ ~ ⑥ (생략)</p> <p>⑦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같은 법</u> ----- ----- ----- ----- ----- ----- -----.</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12조(할부철회권)</b></p> <p>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u>교부받은</u> 날(단, 할부계약서를 <u>교부받은</u>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u>교부받지</u>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p> <p>1. ~ 5. (생략)</p> <p>6. <u>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u> 이용금액</p> <p>② 회원이 <u>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u>기재된 서면</u>을 발송하여야 합니다.</p>	<p><b>제12조(할부철회권)</b></p> <p>① ----- <u>받은</u> ----- ----- <u>받은</u> ----- ----- ----- <u>받지</u>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31조에</u>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 <u>약정</u> 이용금액</p> <p>② ----- <u>제1항에</u> 따라 ----- ----- ----- <u>적힌</u>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및 법령 통일 대상</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할부거래법상 서면 정의 반영</p>
<p><b>제13조(할부항변권)</b></p> <p>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p>	<p><b>제13조(할부항변권)</b></p> <p>① -----</p>	

<p>비스의 <u>대가가</u>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p> <p>② (생략)</p> <p>③ 카드사는 <u>서면으로</u>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u>서면으로</u>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p> <p>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u>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u>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p> <p>⑤ (생략)</p>	<p>----- <u>대가가</u> -----</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u>있는 경우</u> -----</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서면 또는 전자문서로</u> -----</p> <p>-----</p> <p>----- <u>서면 또는 전자문서로</u> -----</p> <p>-----</p> <p>-----</p> <p>④ -----</p> <p>-----</p> <p>----- <u>해결될 때(소송 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는</u> -----</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 및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할부거래법상 서면 정의 반영</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b></p> <p>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u>회원의</u>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절차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② (생략)</p>	<p><b>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b></p> <p>① ----- <u>회원이</u>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③ <u>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u>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로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p> <p>④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u>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u> 제23조에서 규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⑤ <u>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u> 회원은 제4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p>③ <u>회원이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u> 카드사는 ----- ----- ----- ----- ----- ----- -----.</p> <p>④ ----- ----- ----- <u>단기카드</u> <u>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u> ----- ----- -----.</p> <p>⑤ <u>회원은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u> ----- ----- -----.</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b></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u>동종의 유사한</u>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p> <p>2. ~ 3. (생략)</p> <p>⑤ ~ ⑥ (생략)</p> <p>⑦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p>	<p><b>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 ----- ----- <u>같은 종류의</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⑧ ~ ⑨ (생략)</p> <p>⑩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u>절상되어</u>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p> <p>⑪ (생략)</p> <p>⑫ 카드사는 <u>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u>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p> <p>⑬ (생략)</p>	<p>----- ----- <u>소멸시기, 사용방법 등</u> ----- ----- ----- ----- ----- ----- ----- ----- -----</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p>⑩ ----- <u>올림되어</u> ----- ----- ----- ----- ----- -----</p> <p>⑪ (현행과 같음)</p> <p>⑫ ----- <u>포인트 현금성 사용, 포인트 자동 사용(결제대금 차감) 등</u> ----- ----- ----- -----</p> <p>⑬ (현행과 같음)</p>	<p>소멸예정 포인트 사용방법 안내 강화</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포인트 자동사용 편의성 향상 근거 규정 마련</p>
<p><b>제15조의2(전월실적 안내)</b></p> <p>카드사는 회원의 <u>카드 부가서비스</u> 이용과 관련된 <u>전월실적</u>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p>	<p><b>제15조의2(전월실적 안내)</b></p> <p>----- <u>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u> ----- <u>전월실적 및 전월실적 인정기준, 이에 포함·제외되는 항목들을</u> ----- ----- <u>앱(App)을</u> ----- -----</p>	<p>전월실적 인정 기준 안내 강화</p> <p>법제처 요청 외국어 정비</p>
<p><b>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b></p> <p>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u>동의를 한 후</u>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② <u>동의를 서면</u>,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p>	<p><b>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b></p> <p>① ----- ----- ----- ----- ----- ----- ----- ----- ----- ----- ----- ----- ----- ----- ----- -----</p> <p>----- <u>동의 후</u> ----- ----- -----</p> <p>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p>

<p>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p>	<p>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 ----- ----- ----- -----.</p>	<p>정비 및 법령 통일 대상, 어문규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b></p> <p>① (생략)</p> <p>②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u>신용변동</u>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p> <p>③ (생략)</p> <p>(신설)</p>	<p><b>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신용도 변동</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u>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u></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및 어문규범 정비</p> <p>조항 정비에 따라 §19④에서 이동</p>
<p><b>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b></p> <p>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1. <u>카드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사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u></p> <p>2. <u>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동음성 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u></p> <p>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p>	<p><b>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본인확인조치)</b></p> <p>①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p> <p>1. <u>카드사에 등록된 회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u></p> <p>2. <u>회원과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u></p> <p>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이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야 하며,</p>	<p>내용 정비로 항 제목 변경</p> <p>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p>

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또는 리더기를 통과하거나 제3호에 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휴대폰을 통하여 받은 일회성 비밀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식 등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증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바목 및 사목의 방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가. 회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원본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한 경우를 말한다)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우편(E-MAIL),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받는 방법

나.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직원이 영상통화(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사람이 회원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 및 요청 시점에 실제로 얼굴 등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각 시점마다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통해 회원의 영상과 회원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는 방법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방법

라.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회원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을 이체받거나, 카드사가 회원에게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마. 회원이 사전에 카드사에 등록한 생체정보와 회원이 제시하는 생체정보를 비교하거나, 회원의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마치고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 신원정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저장한 정보를 전송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사항  
반영 및 정비

<p>② <u>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 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 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 스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 를 운영합니다.</u></p> <p>③ <u>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 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 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u></p>	<p><u>하는 등의 방법</u></p> <p><u>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 전화와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 번호,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방법</u></p> <p><u>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장 정보 등) 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 보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u>1. 카드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출 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 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 로 확인된 경우</u></p> <p><u>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 능한 경우</u></p> <p>③ <u>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 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 를 한다는 취지와 장기카드대출(카드 론) 신청의 금융거래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u></p>	<p>통신사기피해환 급법 시행령상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 반영</p> <p>통신사기피해환 급법 시행령상 안내의무 반영 (기존 ③항은 제18조로 이동)</p>
<p><b>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 능금액)</b></p> <p>① (생략)</p> <p>② <u>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 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 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u></p>	<p><b>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 능금액)</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회원의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p>

<p>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p> <p>③ (생략)</p>	<p>카드이용 가능 한도의 미사용금액 이내가 되도록 ----- -----.</p> <p>③ (현행과 같음)</p>	<p>표현으로 정비</p>
<p><b>제21조(대출금 상환)</b></p> <p>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p> <p>② ~ ⑥ (생략)</p> <p>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p>	<p><b>제21조(대출금 상환)</b></p> <p>① -----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대출금 전액을 ----- -----.</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b></p> <p>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u>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u>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u>일치하도록</u> 변경하여야 합니다.</p>	<p><b>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b></p> <p>① ----- 율·계산방법 및 지급의 시기·방법에 ----- ----- 일치하도록 그 율을 ----- -----.</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p><b>제27조(대금결제)</b></p> <p>① (생략)</p> <p>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고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u>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u></p> <p>③ (생략)</p> <p>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u>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u></p> <p>*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p> <p>⑤ (생략)</p> <p>⑥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p>	<p><b>제27조(대금결제)</b></p> <p>① (생략)</p> <p>② ----- ----- ----- ----- ----- ----- -----, <u>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결제금액보다 적어 -----</u> ----- ----- ----- <u>다음 계산식의 -----</u> ----- <u>다음 날 -----.</u>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p>	<p>해외결제 취소 시 환율 손익 부담 기준 명확화</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u>증빙사본</u>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p> <p>⑦ (생략)</p> <p>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u>원금에 우선</u>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p> <p>⑨ ~ ⑩ (생략)</p> <p>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u>공제한</u> 금액으로 합니다.</p> <p>⑫ ~ ⑬ (생략)</p>	<p>----- ----- ----- ----- <u>증빙자료 사본</u> ----- -----.</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u>원금</u> <u>보다 우선하여</u> ----- ----- -----.</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⑪ ----- ----- ----- <u>제외한</u> -----.</p> <p>⑫ ~ ⑬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28조(자동이체결제)</b></p> <p>① ~ ② (생략)</p> <p>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u>인출</u>,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p> <p>④ ~ ⑤ (생략)</p>	<p><b>제28조(자동이체결제)</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인출</u> <u>하여</u>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빙빙))</b></p> <p>① (생략)</p> <p>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p>	<p><b>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빙빙))</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카드사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u>10~100%</u>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p> <p>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u>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u></p> <p>④ (생략)</p>	<p>----- ----- ----- <u>1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u> ----- ----- -----</p> <p>③ ----- ----- ----- ----- <u>여러 매의</u> ----- -----</p> <p>④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및 어문규범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b></p> <p>① ~ ⑤ (생략)</p> <p>⑥ 카드사는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u>월부터</u> 상환이 완료되는 마지막 월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해당 회원에게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u>총 원금잔액(총 이월잔액)에</u>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p> <p>⑦ (생략)</p>	<p><b>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b></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u>달부터</u> ----- ----- <u>달을</u> ----- ----- <u>원금</u> ----- <u>잔액 총액(이월 잔액 총액)에</u> ----- -----</p> <p>⑦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33조(적용 대상)</b></p> <p>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회원</p>	<p><b>제33조(적용 대상)</b></p> <p>① ----- -----</p>	

<p>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u>못할</u>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p> <p>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카드사가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u>국내·외</u> 일시불 이용금액에 <u>한하여</u>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p>	<p>----- ----- ----- ----- <u>못할</u> <u>회</u> <u>원</u>은 ----- -----.</p> <p>② ----- ----- ----- ----- <u>국내외</u> ----- ----- <u>대해서만</u> ----- ----- -----.</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및 일본어투 정비</p>
<p><b>제35조(결제금액)</b></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p> <p>○ {<u>전월</u>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u>당월</u>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최소결제비율</p> <p>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p> <p>○ {<u>전월</u>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u>당월</u>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약정결제비율</p> <p>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p> <p>○ <u>전월</u>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p>	<p><b>제35조(결제금액)</b></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지난달</u> ----- ----- + <u>이달</u> ----- ----- } × -----</p> <p>3. ----- ----- : ○ {<u>지난달</u> ----- ----- + <u>이달</u> ----- ----- } × -----</p> <p>4. ----- ----- : ○ <u>지난달</u>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 일수*/365(윤년은 366)</p> <p>* 이용경과일수 : <u>전월</u> 대금 결제일 <u>익일부터</u>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p> <p>② ~ ⑤ (생 략)</p>	<p>----- × ----- ----- × ----- -----</p> <p>* ----- : <u>지난달</u> ----- <u>다음 날부터 이달</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36조(수수료율 등)</b></p> <p>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 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u>법령이</u> <u>허용하는 한도 내에서</u>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p> <p>② (생 략)</p>	<p><b>제36조(수수료율 등)</b></p> <p>① ----- ----- ----- <u>법령에</u> <u>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 상)</b></p> <p>① ~ ② (생 략)</p> <p>③ (생 략)</p> <p>1. (생 략)</p> <p>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u>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u>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 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p> <p>3. ~ 6. (생 략)</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u> <u>·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u> <u>지고</u>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b>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 상)</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분실</u> <u>·도난 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허위로</u> <u>밝혀지고</u> ----- ----- -----.</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p><b>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b></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b>제41조(위조·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43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b></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 질서를 <u>문란케하여</u>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p> <p>④ (생략)</p>	<p><b>제43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문란하게 하여</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44조(변경사항의 통지)</b></p> <p>① (생략)</p> <p>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u>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u></p>	<p><b>제44조(변경사항의 통지)</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u> ----- ----- ----- ----- -----.</p>	<p>법제처 요청 일본어 투 정비</p>

<p><b>제47조(변경승인 등)</b></p> <p>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u>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등으로</u>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p> <p>④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u>통지 및 변경예정</u>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u>광고</u>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p> <p>⑤ ~ ⑥ (생략)</p>	<p><b>제47조(변경승인 등)</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2항</u> <u>외의 방법으로</u> ----- -----.</p> <p>④ ----- ----- <u>통지하고</u> ----- ----- <u>광고하는 방법</u>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50조(관할법원)</b></p> <p>① <u>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u></p> <p>② <u>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b>제50조(관할법원)</b></p> <p>① <u>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u></p> <p>② ----- ----- <u>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u> ----- ----- -----.</p>	<p>공정위 시정요청 반영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이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개정)</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